



2017학년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

2017학년도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4.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장 엄기성

1. 지원 자격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적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 정원: 99명 이내(우선 선발 인원 25% 이내 포함)

가. 정원 내 : 90명

나. 정원 외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각 호의 자 9명 이내

3.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

전형 유형	내용	선발 인원 (우선 선발 인원 포함)
정원 내	서류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과학 창의성 캠프,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	90명
정원 외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¹⁾ 은 [별첨 1] 참조	9명 이내 (모집 정원의 10% 이내)

*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복 접수 불가

4. 응시 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1)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주소 : www.jinhakapply.com(진학사)

2) 인터넷 추천서 입력 사이트 주소 : www.jinhakapply.com(진학사), www.ts.hs.kr(본교 홈페이지)

3) 접수 기간

가) 학생 지원서 : 2016.04.05.(화) 09:00 ~ 04.11.(월) 17:00

나) 교사 추천서 : 2016.04.05.(화) 09:00 ~ 04.12.(화) 17:00

4) 원서 접수 사이트 임시 오픈일 : 2016.03.30.(수) 15:00

나. 서류 제출 : 반드시 우편으로만 제출 (* 방문접수 불가)

1) 주소 : 우)42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4(황금2동 613번지) 입학관리부

2) 전화번호 : 053) 231-7540~3

3) 기한 : 2016.04.12.(화) 소인까지 유효함

1) [별첨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5.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유의 사항
응시원서(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을 우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학교장의 직인을 득한 후 제출함.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저장형태 : *.jpg)을 업로드하며, 수정된 사진은 사용 금지함.
자기소개서(1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우편 제출은 없음.
교사추천서(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우편 제출은 없음. -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한 후, 추천서 입력이 가능함.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출력물을 우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부Ⅱ는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함. - 소속 학교장의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우편으로 제출함. -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Ⅱ를 모두 제출함. - 지원자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Ⅱ를 모두 제출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 증명서(없는 경우 성적 증명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서류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 2] 참조

※ 유의 사항

1. 모든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원 수료 여부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교외 수상은 기록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
2. 위 제출 서류는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됨.(정원 외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3. 모든 우편 제출 서류는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5. 제출 서류에 대한 기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2) [별첨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 서류

6.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
방법	서류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과학 창의성 캠프
내용	제출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영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과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재성 및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	수학·과학에 대한 잠재능력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시	2016.04.26.(화) ~	2016.05.22.(일) 12:30 ~ 18:30	2016.07.09.(토) 09:30 ~07.10.(일) 18:30
장소	본교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본교
선발 인원	영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전원	180명 내외 (우선 선발 인원 포함)	정원 내 : 90명 / 정원 외 : 9명 이내 (우선 선발 인원 포함)
합격자 공고	2016.05.18.(수) 16:00 본교 홈페이지 공고	2016.06.21.(화) 16:00 본교 홈페이지 공고	2016.07.29.(금) 16:00 본교 홈페이지 공고

* 정원 내 및 정원 외 전형은 동일하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전형료

구분	정원 내 지원자	2단계 전형 대상자	3단계 전형 대상자
전형료	20,000원	추가 30,000원	추가 40,000원
* 유의 사항			
1. 인터넷 원서 접수시 1, 2단계 전형료는 통합 납부함. 2. 1단계 불합격자는 접수시 입력한 계좌로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함. 3. 1단계 합격자(2단계 응시대상자) 중 2단계 응시포기자는 기한 내 응시포기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2단계 전형료를 환불함. 4. 2단계 합격자(3단계 응시대상자)는 3단계 전형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함.(※ 납부 방법 및 기간은 추후 공지) 5. 인터넷 원서 접수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 희망자가 별도 부담함. 6. 정원 외 지원자는 전형료 및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를 면제함.			

8. 기타 사항

- 가. 본교의 필요에 의해 전형 기간 중 별도의 추가 전형을 할 수 있음.
- 나. 전형에 불참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
- 마. 최종 합격자는 입학 전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최종합격자 중에서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 허가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②항,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사.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별첨 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권자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5) 그 밖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7)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아동교육비) 수급권자
 - (8) 차상위 저소득층 :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차상위 의료급여 2종,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9) 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별첨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증빙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선정통지서 등) 1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일부장관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외국 국적인 자	- 부모와 지원자의 여권 사본이나 증명서 1부
※ 제출 서류 유의사항	
<p>○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에 부,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결손가정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것)</p> <p>○ 차상위계층확인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차상위장 애수당, 차상위자활급여 등) 확인서를 제출함. -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p>	